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33 | 2024.04.29 (2024.04.22~04.28)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32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4.22~04.28)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2.27.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정비(관계부처 합동)'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정보보호·소프트웨어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소프트웨어 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 강화를 위해 6개의 법정 인증제도를 운영하였으나, 이들 인증제도는 여러 순네키능에도 불구하고 영세·중소기업 등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SaaS 기업간담회를 비롯하여 정보보호·SW산업계 협·단체 및 주요 수요기업, 제도별 인증·평가기관 등으로부터 인증제도별 개선의견과 애로사항을 수렴하였으며, 정보보호·SW 품질 수준은 유지하되, 혁신을 저해하는 불필요·불합리한 부담은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인증 기간, 인증 비용,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AI-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이니셔티브를 심의·의결한 바, AI-반도체, 첨단 바이오, 퀀텀 기술은 유례없이 빠른 기술변화 속 글로벌 경제·사회·안보 패러다임을 급속하게 변화시킬 핵심 전략기술로, 세계 각국의 주도권 다툼이 치열한 게임체인저 기술로 주목받고 있음. 그간 정부는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의 기술주권 확보와 미래 시장 주도를 위한 국가 이니셔티브 방향을 제시해 왔으며, 이번 회의에서 민관이 함께 이를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정부는 AI-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분야 '2030년 글로벌 3대 국가 도약'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들 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와 선도적 시장을 열어갈 기술별 가치사슬의 고도화, 동맹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사업 구조 및 사업추진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담당자들과 의견을 교류하기 위해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법정계획)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대상은 고속·일반철도 중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고시된 노선이며, (재원조달) 철도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철도 부지와 인접지역 개발을 통해 얻는 수익으로 충당 원칙**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가 원활히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5월 중순에는 '가이드라인(안)'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고, 5월 말에 배포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3.12.26 제정, 이하 특별법)」이 4월 27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법 제8조) 구성 및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법 제34조)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하였습니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여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으로,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법 제4조)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법 제7조, 10년 단위)을 수립해야 하며,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정비구역을 지정(법 제11조)하고, 도시정비법 등 개별 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며, 특별법에 따른 각종 혜택(법 제21~29조)은 특별정비구역에 한해 적용됩니다.

베드타운으로 조성된 신도시의 도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시 차원의 공간 재구조화가 필요하지만 1개 아파트 단지를 기본단위로 하는 기존 재건축 사업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이에 따라 여러 개의 단지를 묶어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각종 특례를 부여하여 구역 내 통합 재건축 등 통합정비를 유도하고 있으며, 특별정비구역 내 주거단지들을 통합정비하면 안전진단을 면제(법 제26조)받을 수 있으며, 법적 상한 용적률의 150% 상향(제3종일반주거 기준 300%→450%) 및 용도지역 변경(법 제 25, 29조)도 가능합니다.

【입법(행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온라인 고객센터 및 전화자동응답(ARS) 처리시스템에 실시간 상담기능을 부여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3.12.19.)에 따라 기간통신 서비스 안정성을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 및 안정성 보고서 작성·공개 의무 대상자의 기준,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실적 및 안정성 보고서 작성·제출기간, 안정성 보고서 미공개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며, 전기통신서비스 재판매(알뜰폰)를 위한 도매제공의무사업자 및 도매제공의무서비스 관련 규정이 이동됨에 따라 시행령의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상호접속 등에 관한 고시의 주체를 정정하는 등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개시시점 3년 유예 등 「주택법」 개정('24.3.19. 공포·시행, '24.6.20. 일부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전기관 특별공급 등 거주 의무기간 삭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거주 의무기간 신설, 거주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수산물 인증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활용도가 저조한 활성처리제 비사용 인증을 삭제하고, 인증 대상 확대 및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무항생제수산물 원료가공품 인증을 신설하는 등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거래 방식의 후원방문판매업이 가능해지면서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전자거래 매출을 제외하도록 명시하는 등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을 재정비하고, 최근 변화하고 있는 경제 환경 및 시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의 개별재화 가격제한과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 시 통지 의무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계좌 개설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 의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 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정보공유 의무 등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의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을 별도로 규정하기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출입국 및 이민 관리, 이주배경시민에 처우·정착지원 및 이민사회통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이주배경시민청을 신설함으로써 이민사회정책이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의원 등 13인)**」,

최근 새마을금고 경영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명목하에 대통령령이 개정되어 상근이사장과 상근감사의 자격 요건까지 규정됨에 따라 회원으로서 금고의 성장에 기여한 기간 또는 대의원으로서 활동한 경력이 상근임원의 자격 요건이 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고자 일정 기간의 회원 또는 대의원 경력이 있으면 상근임원으로 선임 또는 선출될 수 있도록 자격 규정을 개정하여 새마을금고 경영에 기여하기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감면하여 건설투자 활성화와 경기활력 제고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1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국회 의사일정(안)】

현재까지 교섭단체간 합의된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없으나, 민주당은 4/26 5월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여 4/30(화) 14시 제414회국회(임시회) 본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아울러 5/2 본회의를 개최하여 이태원 특별법 재표결, 전세 사기 특별법,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표결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정보보호·소프트웨어 인증제도 획기적으로 개선(과학기술정보통신부) 7
-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글로벌 3대 국가 도약(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설명회 개최(국토교통부) 14
-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본격 시행(국토교통부) 14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환경부) 16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 16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국토교통부) 16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국토교통부) 18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소벤처기업부) 19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20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
-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 21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환경부) 21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22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23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해양수산부) 23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중소벤처기업부) 24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정거래위원회) 24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25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의원 등 13인) 27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27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1인) 28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 예정된 회의 일정 없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32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4.22~04.28) [바로가기](#)

- [해외 규제] 미 대선 “트럼프 재집권”시 우리 기업의 미국 비즈니스에 미칠 영향
- [지적재산권]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최근의 대법원 판결 흐름을 뒤엎고 미라베그론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 [형사]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의 내용과 그 의미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소프트웨어 인증제도 획기적으로 개선

2024-04-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소프트웨어 인증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24.2.27.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발표된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정비(관계부처 합동)'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정보보호·소프트웨어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함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소프트웨어 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 강화를 위해 6개의 법정 인증제도*를 운영 중이나, 이들 인증제도는 여러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영세·중소기업 등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음

* △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ISMS, '02~), △ 클라우드 보안인증 (CSAP, '16~), △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 정보보호인증(IoT '18~), △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CC, '02~), △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18~), △ SW 품질인증(GS, '01~)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SaaS 기업간담회를 비롯하여 정보보호·SW산업계 협·단체 및 주요 수요기업, 제도별 인증·평가기관 등과 다수의 설명회 및 간담회를 통해 인증제도별 개선의견과 애로사항을 수렴하였으며, 정보보호·SW 품질 수준은 유지하되, 혁신을 저해하는 불필요·불합리한 부담은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인증 기간, 인증 비용,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Cloud Security Assurance Program)

- 클라우드 보안인증은 불필요한 행정 처리 기간을 최소화하여 인증 기간을 평균 5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
- 인증 및 평가기관의 심사인력을 추가 투입하여 인증 적체를 즉각 해소하고, 신규 평가기관을 상반기 내 추가 지정하여 증가하는 인증 수요에 적기 대응
- 현재 추진 중인 수수료 지원은 지원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인증 획득 이후 매년 실시했던 사후평가는 평가방식 개선(현장 → 서면 평가)**을 통해 사업자의 비용 및 행정 부담 완화

* △중견기업(30% → 50%), △중기업(50% → 80%), △소기업(70% → 80%)

** 현장평가(유료) 4회 → 서류평가(무료) 3회+ 2년 차 현장평가(유료) 1회

- 보안 수준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서면 평가 미흡 기업에 대해서는 샘플링 현장 점검을 도입하고, 점검 결과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매년 현장평가 실시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

②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은 중소기업의 비용, 기간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ISMS 간편인증제' 도입
- 일정 수준 이하의 중소기업(매출액 300억원 이하 등)에게 인증 점검항목을 경량화(80→40개 수준)하고, 수수료를 줄이는(평균 1,100→500만 원) 한편, 의무 대상 기준도 완화*할 예정

* 기존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의 기업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상향(법개정 예정)

- 기존 이메일, 우편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던 인증심사 절차를 전산시스템화 하여 심사 소요 기간을 단축(평균 5→2개월)하고, 침해사고 미발생 기업에는 매년 현장에서 받아야 하는 사후심사를 서면심사로 전환하는 등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

③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IoT) 보안인증

- 정보통신망 연결기기(IoT) 인증은 수요기업에서 색깔 등 간단한 디자인 일부 변경에도 신규 인증을 받아야 했으나,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파생모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험 기간(15일→1~2일) 및 수수료(13백만 원→0.7~1.4백만 원)를 대폭 줄이도록 개선할 계획

* 기 인증받은 제품에 대한 색깔, 간단한 디자인(사각형↔원형 등) 변경은 필수 보안 기능 확인 등 수수료 대폭 완화
(6백만 원(라이트), 13백만 원(베이직) → 0.7(A형, 단순외형형) ~ 1.4백만 원(B형, 일부내용시험))

④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CC, Common Criteria) 및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은 평균 5개월 이상의 긴 소요 기간이 수요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던 만큼, 시험인력을 단기간에 집중 투입하여 시험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고, 신규 신청기업에 대한 시험 수수료를 50% 이상 감면하여 기존 5천만 원 내외 고가의 수수료를 2천만 원으로 절감
- 인증·시험기관, 산업계, 민간 전문가 연구반을 구성하여 올해 8월까지 절차 간소화 및 시험 수수료의 근본적 절감 방안 마련
-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의 경우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제출물 작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 준비 컨설팅을 실시하고, 중소·영세 기업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시험 수수료 지원을 확대하여 성능이 우수한 정보보호제품의 도입 및 유통 활성화

※ '24년 12개 사 대상 컨설팅 및 수수료 최대 1천만 원 지원(평균 1,700만→700만, 70% 감소)

⑤ SW 품질 인증(GS, Good Software)

- SW 품질인증(GS인증)은 소요 기간을 평균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기 위해, 인증 수요가 5개의 인증기관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21.5월 신규 지정한 3개 인증기관의 인증 분야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시험 이관 및 시험원 충원, 탄력적 인력 운영 추진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신규)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신규)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신규)부산IT융합부품연구소(CIDI)

-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경미한 변경(업데이트)에 대한 재인증 비용을 전액 면제(약 500만원)하고, 중대한 변경(업그레이드) 재인증 비용은 50% 감면(약 700만원) 할 예정
- 정보보호 인증제품의 보안성 평가 면제(약 200만원 감면) 대상도 확대*

* (기존) CC인증 → (확대) CC인증, 보안기능확인서, 성능평가, 신속확인제

- SW 품질에 영향이 적은 단순 변경 등 재인증이 불필요한 경우를 기업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SaaS 제품 특성을 고려한 인증기준 정비 등 SaaS 품질인증 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

< 정보보호·SW 분야 인증제도 개선방안 >

01 혁신 제품·서비스의 적기 시장진출 지원을 위한 인증기간 획기적 단축



☑ 평가인력기관 확충, 시스템 자동화, 신규 기업 지원 강화 등으로 신청부터 판정까지 기간 대폭 단축 (각 인증별 평균 2개월 이내)

	CSAP	평가인력 추가, 평가기관 추가 지정(6월)을 통해 인증절차 즉각 해소, 인증위원회 수시 개최 등으로 행정처리 기간 단축	평균	5개월	→	2개월
	ISMS	신청, 평가기관 지정, 점검 등 인증 절차 전반을 시스템을 통해 자동화 (기존 이메일우편), 불편·불필요한 시간 소요 감축	평균	5개월	→	2개월
	CC	시험인력 추가 투입, 인증 준비가 어려운 신규 신청기업에 제출문서 가이드, 템플릿, 사전준비 테스트베드 환경 구축 등 지원 하여 소요기간 단축	평균	5개월	→	2개월
	IoT보안	인증받은 제품 중 단순 디자인만 변경된 파생제품(신청의 30%)에 대해 적용 하는 파생모델 제도(23년 시행) 본격 적용확산	평균	15일	→	1~2일
	GS	3개 인증기관 평가 분야 확대 (5개~10개), 적격적 시험 기관 등 인증 수요 분산 및 시험인력 충원 등을 통해 소요기간 단축	평균	3개월	→	2개월

02 중소기업이 부담 없이 인증제도를 활용하도록 수수료 절감



☑ 중소기업 대상 수수료 지원과 경량화된 인증 적용으로 기업의 수수료 부담 획기적 절감 (각 인증별 5~20백만원 수준)

	CSAP	중견·중소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24년 수수료 지원 예산규모 및 지원비를 확대(50%~80%)	중소기업 기준 80% 지원 (예: SaaS 표준)	2,900만원	→	약 600만원
	ISMS	매출액 300억 미만 중소기업 등에 평가항목(60개~40개)을 합리화한 ISMS 간편인증 도입(7월말~85개사)	수수료 비용 50% 절감	평균	1,100만원	→ 약 500만원
	CC	민간전문가, 인증/시험기관, 산업계 등 연구반을 구성하여 근본적 수수료 절감방안 검토(8월)	신규 신청기업 시험 수수료 50% 이상 감면	5,000만원	→	2,000만원
	IoT보안	파생모델 제도 적용 제품에 대해 인증 절차 개선과 더불어 수수료도 대폭 감축	600만원(라이트), 1,300만원(베이지)		→	70~140만원
	GS	정보보호 인증제품의 보안성 평가 면제대상 확대(약 200만원 감면)로 비용부담 경감 업데이트(경미한 변경) 재인증 비용 전액 면제 및 업그레이드 재인증 비용 50% 감면	평균	1,400만원	→	<정보보호 인증제품> 약 1,200만원 <재인증 제품> 약 0~700만원

03 정보보호SW품질 수준은 유지하면서, 불편·불합리한 절차는 과감히 개선



☑ 매년 적용하는 사후평가 방식을 개선하여 기업부담을 경감하고(CSAP), 유효기간 합리화(ISMS) 및 재인증 등 절차 간소화(CCS), 신제품(SaaS) 특성을 고려한 인증기준 정비 추진(GS)

	CSAP	사후평가(SaaS)는 서면으로 전환하되 샘플링 현장점검(무료) 도입 다만, 보안수준 확보를 위해 2년차 사후평가는 현장점검	사후평가 간소화	현장(유료)	→	서면(무료)
	ISMS	유효기간 확대(3년~5년) 및 인증 후 3년간 침해사고 미발생 기업 대상으로 사후평가를 서면으로 전환	유효기간 조정	3년	→	5년
	CC	취약점 점검방식, 유효기간 연장(5년~5년) 평가 일부 서면화 등을 비롯한 시험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인증기준 완화 및 기업부담 경감 방안 마련(8월)				
	GS	SW품질에 영향이 적은 단순 변경 등 재인증이 불필요한 경우를 기업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제공(6월) 국제 표준 반영, SaaS 제품 특성을 고려한 GS인증 기준 정비를 통해 SaaS 특화 품질인증 방안 마련(6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중장기 정책 및 연구개발(이하 R&D) 예산배분 등에 대한 심의와 국가 과학기술 혁신·정책 방향 등에 대한 자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전원회의***는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AI-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이니셔티브를 심의·의결함

* 위원구성 : 의장(대통령), 부의장, 5개 부처(기재·교육·과기·산업·중기) 장관, 자문위원 11명, 심의위원 10명, 과학기술수석(간사위원) 등 29명

AI-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기술은 유례없이 빠른 기술변화 속 글로벌 경제·사회·안보 패러다임을 급속하게 변화시킬 핵심 전략기술로, 세계 각국의 주도권 다툼이 치열한 게임체인저 기술로 주목받고 있음. 그간 정부는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의 기술주권 확보와 미래 시장 주도를 위한 국가 이니셔티브 방향을 제시해 왔으며, 이번 회의는 민관이 함께 이를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으로 확정하는 자리임

정부는 AI-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분야 ‘2030년 글로벌 3대 국가 도약’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들 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와 선도적 시장을 열어갈 기술별 가치사슬의 고도화, 동맹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주요 내용으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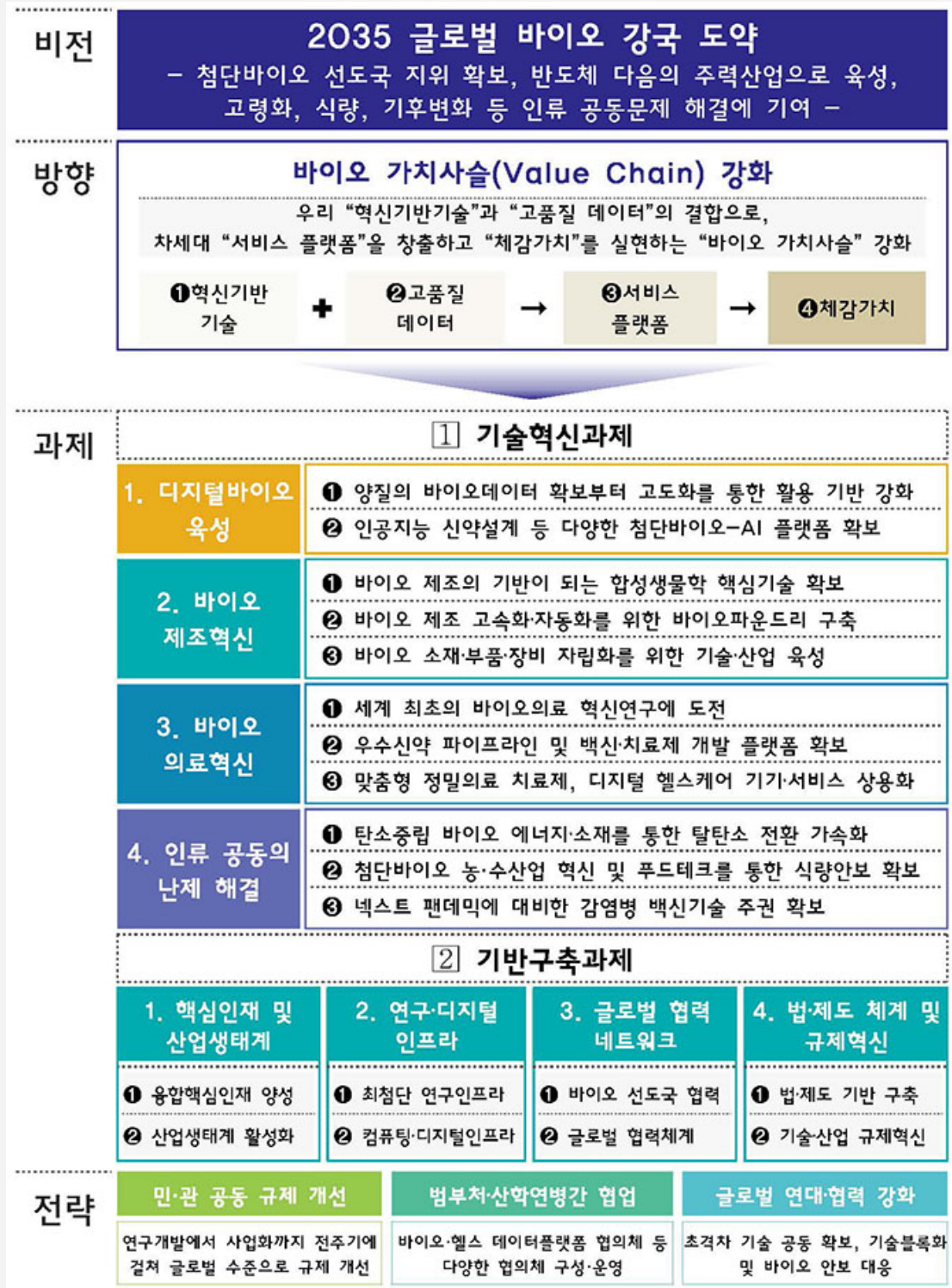
① AI-반도체 이니셔티브

- AI가 곧 국가경쟁력인 AI 시대, 전 세계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AI 글로벌 3대 국가 도약과 K-반도체 새로운 신화창조를 목표로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추진
- 향후 3년이 글로벌 AI 전쟁의 성패를 좌우할 골든타임으로 AI시대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AI모델, AI반도체, 클라우드, 디바이스, SW 등이 연결되어 있는 AI 가치사슬의 유기적 연계와 성장이 핵심
- 「AI-반도체 이니셔티브」는 우리나라 AI 가치사슬 분야별 강점과 요소기술 분석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역량을 결집해야 할 구체적인 전략과제 제시



②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

- 글로벌 바이오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그동안 축적된 우리의 과학기술·ICT 역량을 기반으로 바이오 후발국에서 2035년 바이오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를 추진



③ 퀀텀 이니셔티브

- 양자과학기술은 경제·사회·안보·환경 등 유망 산업의 혁신적 변화와 다양한 난제 해결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국방·안보적 높은 파급력으로 미래 국가 안보에 필수 핵심 전략기술로 주목받고 있음. 그간 우리 정부는 디지털을 넘어 다가올 퀀텀 시대(Quantum beyond Digital)를 준비하기 위해 양자과학기술* 중점 추진방향을 제시해 왔으며, 이번 「퀀텀 이니셔티브」 마련을 통해 국가전략을 구체화하고 집중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양자과학기술(Quantum Science & Technology) : 양자물리적 특성(얽힘·중첩 등)을 컴퓨팅·통신·센싱 등에 적용하여 초거대·초고속 연산, 초신뢰 연결, 초정밀 측정 등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국토교통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설명회 개최

- 추후 ‘사업제안 가이드라인’ 의견수렴 이후 5월 말 배포

2024-04-25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사업 구조 및 사업추진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담당자들과 의견을 교류하기 위해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함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가 원활히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5월 중순에는 ‘가이드라인(안)’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고, 5월 말에 배포할 예정임을 밝힘

주요 내용으로는

① (법정계획)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대상은 고속·일반철도 중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고시된 노선임

- ‘종합계획’은 대상노선, 개발범위 등을 담은 법정계획으로,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가 수립할 예정 (’25.12월 고시예정)
- 지자체(시·도)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노선에 대한 ‘철도부지개발사업 기본계획’과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및 자원조달계획 등을 마련

② (자원조달) 철도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철도 부지와 인접지역 개발을 통해 얻는 수익으로 충당 원칙

- 정부에서 사업시행자(정부출자기업체)에게 철도부지(국유재산)를 출자하면, 사업시행자는 이를 근거로 ‘채권’을 발행하여 지하화 사업비용을 조달한 이후 상부개발 이익으로 지하화 사업비용 충당
- 단, 자원이 부족한 경우 지자체에서 일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

* 건축제한 완화, 용적률·건폐율 완화, 도시공원·녹지 확보기준 및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본격 시행

- 내달 선도지구 규모·기준 등 발표

2024-04-27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3.12.26 제정, 이하 특별법)」이 4월 27일 본격 시행됨.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법 제8조) 구성 및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법 제34조)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함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여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으로,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법 제4조)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법 제7조, 10년 단위)을 수립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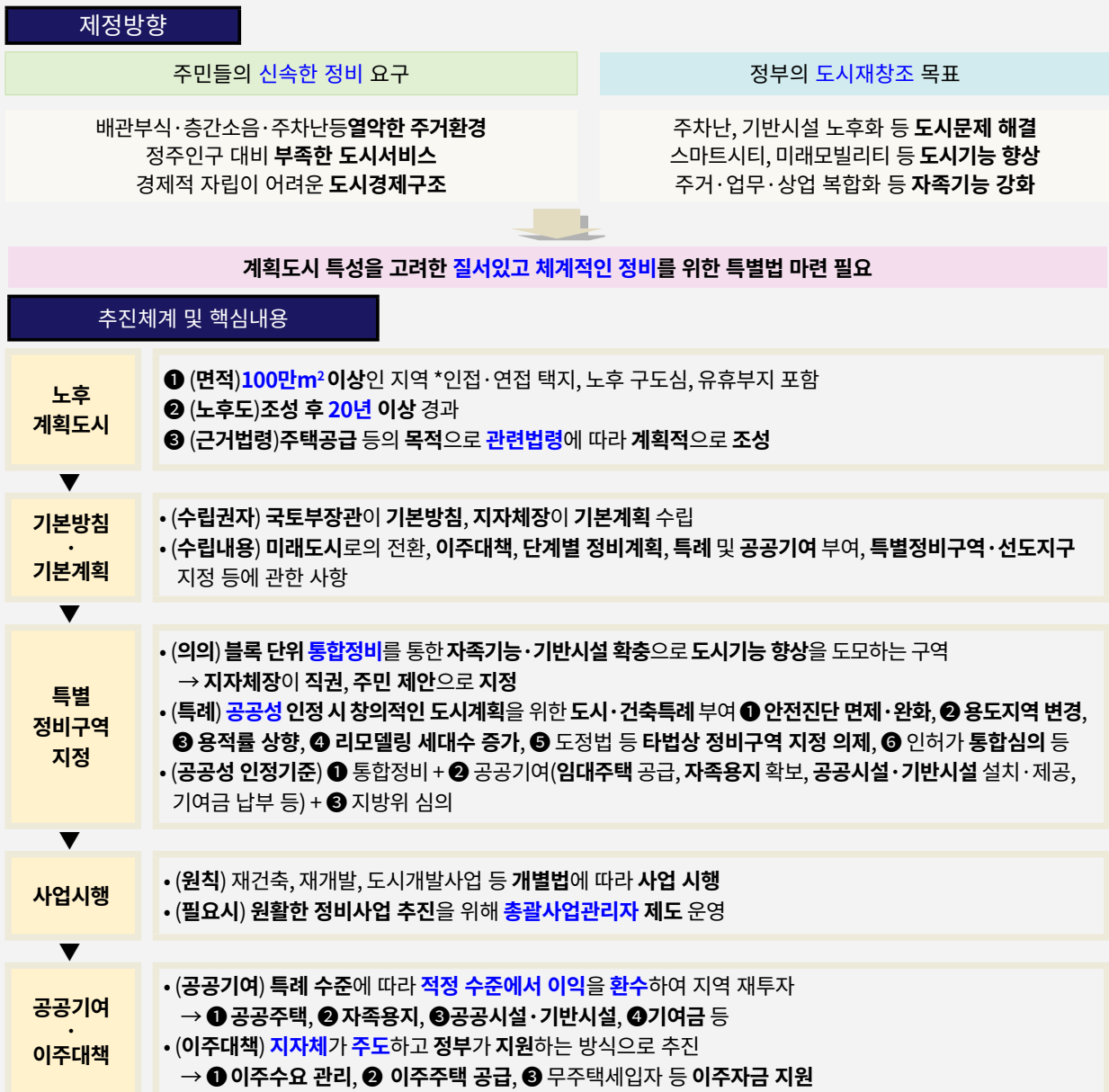
*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정비구역을 지정**(법 제11조)하고, 도시정비법 등 **개별 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며, 특별법에 따른 각종 **혜택**(법 제21~29조)은 **특별정비구역**에 한해 **적용**함

베드타운으로 조성된 신도시의 도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시 차원의 공간 재구조화**가 필요하지만 1개 아파트 단지를 기본단위로 하는 **기존 재건축 사업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이에 따라 **여러 개의 단지를 묶어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각종 특례를 부여하여 **구역 내 통합 재건축 등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것임

특별정비구역 내 주거단지들을 통합정비하면 안전진단을 면제(법 제26조)받는다. **법적 상한 용적률의 150% 상향**(제3종일반주거 기준 300%→450%) 및 **용도지역 변경**(법 제25, 29조)도 가능함

< 노후계획도시정비및지원 특별법 주요내용 >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4-23 시행

종전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설명회나 공청회의 개최 생략 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설명회나 공청회 개최 생략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제3조제1호 삭제)

환경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04-24 시행
-----	--------------------------	---------------

폐기물처분부담금의 효과적인 부과·징수를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폐기물 소각·매립 처분량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작성한 자료를 기초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절차 및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등 관련된 인용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제29조제4항, 제30조제1항, 별지 제30호서식)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	2024-04-25 시행 (다만, 제25조제2항제3호는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예정)
-------	----------------------------------	--

도심항공교통의 도입·확산과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단위의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심항공교통 실증 및 상용화를 위한 실증사업구역 및 시범운용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및 도심항공교통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68호, 2023. 10. 24. 공포, 2024. 4. 25. 시행)됨

이에 따라, 모법의 위임에 따라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에 추가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실증사업구역 및 시범운용구역의 지정기준과 해당 구역에서 실증 또는 도심항공교통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의 지정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내용 (제4조)

-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에 실증사업구역과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및 운영의 기본방향, 도심항공교통산업 지원정책의 단계별 추진계획 및 도심항공교통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② 실증사업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제6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 연구개발·시험 등의 실증 목적에 적합하고, 구역 내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등의 요건을 갖춘 구역을 실증사업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사업구역 내에서의 실증사업이 모두 종료되거나 실증사업으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실증사업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③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기준 (제7조 및 별표 2)

-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 및 인력 기준을 도심형항공기 운항 분야, 도심항공교통 관리 분야, 버티포트 운영·관리 분야로 구분하여 그 기준을 정함
- 도심형항공기 운항 분야의 실증사업을 하려는 자의 경우 도심형항공기 등 실증을 위한 장비를 갖추고, 도심형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조종사를 1명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등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지정기준을 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④ 시범운용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 시·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시범운용구역의 지정·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신청구역에 소재하는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시범운용구역의 지정·변경 절차를 정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받은 경우 또는 시범운용구역의 운영 과정에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함

⑤ 버티포트 및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등 (제13조, 제14조 및 별표 3)

- 국토교통부장관은 버티포트*를 지정하는 경우 버티포트의 명칭 및 번호, 버티포트의 구분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버티포트는 도심형항공기의 이륙·착륙 구역에 따라 육상버티포트, 수상버티포트 등으로, 버티포트의 시설 확충 정도에 따라 1등급에서 4등급까지로 구분하도록 함

* 버티포트(Vertiport): 도심형항공기의 이륙·착륙 및 항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시설과 사무시설 등의 시설

-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회랑*을 지정하는 경우 회랑의 명칭 및 번호, 도심항공교통회랑의 기점 및 종점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도심항공교통회랑은 순항구간과 입출항구간으로 구분하도록 함

* 도심항공교통회랑(回廊):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형항공기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의 표면의 상공에 표시한 공간의 길

⑥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제19조)

- 시범운용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관한 성과보고서를 시범운용구역을 운영한 해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성과보고서에 대한 평가 결과 및 개선 조치 권고 사항을 성과보고서를 제출받은 해의 6월 30일까지 통보하도록 함

⑦ 의무 가입 대상 책임보험의 요건 (제20조)

- 시범운용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사업을 하는 자가 연구·시범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보험금액을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1명당 1억5천만원, 부상의 경우 1명당 3천만원, 물적 손해의 경우 사고당 10억원 등으로 정함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

2024-04-25 시행

도심항공교통의 도입·확산과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버티포트 및 도심항공교통회랑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심항공교통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768호, 2023. 10. 24. 공포, 2024. 4. 2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

이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기준, 절차 및 버티포트의 설계기준을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버티포트 및 도심항공교통회랑 지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하며,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도심형항공기사용사업의 범위 (제4조)

- 도심형항공기사용사업을 통해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수색·구조·의료·응급후송 등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없고 국가 안보에 위협이 없는 업무를 하는 사업으로 정함

②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기준 및 절차 (제10조 및 별표 2)

-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은 납입자본금 8억5천만원 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 17억 원 이상의 재무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토목기사 등을 포함한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을 11명 이상 확보하여 기술능력을 갖추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술능력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버티포트 개발계획서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명칭 및 사업 기간 등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는 등 버티포트개발사업 허가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③ 버티포트의 설계기준 (제11조)

- 버티포트의 설계는 해당 버티포트 내에 도심형항공기의 이륙·착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 없고, 버티포트 내에서 도심형항공기의 지상 이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는 등의 기준을 갖추도록 하되, 세부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④ 버티포트 및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제17조 및 제18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버티포트의 명칭 및 번호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버티포트가 위치한 지역의 지리적 특성, 도심항공교통회랑으로 연결된 다른 버티포트와의 관계를 고려하도록 하고, 도심항공교통회랑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이 가능한지, 다른 도심항공교통회랑 내에서의 운항을 방해하지 않는지 등에 관한 기술적 검토를 거치도록 함

⑤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절차 (제19조)

-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른 도심항공교통사업 분야와의 연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등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06-01 시행예정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창업기업으로부터 부담금 면제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사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449호, 2024. 4. 23. 공포, 6. 1. 시행)됨

이에 따라, 해당 부담금 면제 신청서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제13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기획재정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4.26. ~06.05.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시 관급자재 변경을 허용하여 실효성 있는 기술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시 관급자재 변경을 허용 (안 제7조의2, 제104조)

- 낙찰자 결정 시 예정가격 이하가 아닌 총공사예산 이하로 낙찰자를 결정토록 하고, 예정가격 미작성 계약에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추가함

※ 문의처 :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전화: 044-215-5213, 팩스: 044-215-8113\)](tel:044-215-52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4.23. ~05.20.
-----------	--------------------	------------------------

부가통신사업자의 온라인 고객센터 및 전화자동응답(ARS) 처리시스템에 실시간 상담기능을 부여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3.12.19.)에 따라 기간통신 서비스 안정성을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 및 안정성 보고서 작성·공개 의무 대상자의 기준,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실적 및 안정성 보고서 작성·제출기간, 안정성 보고서 미공개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며, 전기통신서비스 재판매(알뜰폰)를 위한 도매제공의무사업자 및 도매제공의무서비스 관련 규정이 이동됨에 따라 시행령의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상호접속 등에 관한 고시의 주체를 정정하는 등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부가통신사업자의 온라인 고객센터 및 전화자동응답(ARS) 처리시스템에 실시간 상담기능을 부여 (안 제30조의8제2항제2호)
- ② 기간통신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및 서비스 안정성 보고서 작성·공개 의무 대상사업자 기준 마련 (안 제37조의13제1항)
- ③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실적 및 안정성 보고서 작성·제출기간 구체화 (안 제37조의13제2항, 제37조의14)
- ④ 안정성 보고서 미공개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별표11)

- 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도매제공의무사업자 및 도매제공의무서비스 관련 조문 정비 (안 제39조의7제1항, 제40조제2항, 별표 1, 별표 4)
- ⑥ 상호접속 등에 관한 고시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정정 (별표 4)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기반안전과](tel:044-202-6771) (전화: 044-202-6771, 팩스: 044-202-6011)

환경부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4.22.
~06.03.

민감·취약계층 대상 환경보건이용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내용의 「환경보건법」이 개정('24.3.19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환경보건이용권 운영 관련 사항 신설 (안 제13조의5부터 제13조의10까지)
 -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대상, 신청 및 발급, 전자이용권 시스템 구축·운영, 전담기관 지정기준 및 수행업무, 전담기관 지정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징금 규정 신설
- ② 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사항 추가 및 신설 (안 제22조의제9항)
 -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에게 환경보건이용권 발급에 관한 업무 등 위탁 조항 신설
- ③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항 삭제 및 신설 (안 제22조의2제8호)
 - 환경보건취약계층에 관한 실태조사 및 환경보건이용권 발급에 관한 사무 조항 신설

※ 문의처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tel:044-201-6762) (전화: 044-201-6762, 팩스: 044-201-6765)

환경부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4.22.
~06.03.

민감·취약계층 대상 환경보건이용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환경보건법」이 개정('24.3.19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환경보건이용권 신청 및 발급을 위한 서식 규정 신설 (안 제8조의2제1항부터 제3항)
 - 환경보건이용권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서식을 규정하고, 대리인이 신청 시 필요한 위임장 서식을 규정

※ 문의처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tel:044-201-6762) (전화: 044-201-6762, 팩스: 044-201-6765)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 의무 개시시점 3년 유예 등 「주택법」 개정(‘24.3.19. 공포·시행, ‘24.6.20. 일부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이전기관 특별공급 등 거주 의무기간 삭제 (안 제6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
- ②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거주 의무기간 신설 (안 제60조의2제1항제4호)
- ③ 거주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명확화 (안 제60조의1제2항)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용어에 공공주택사업자를 포함하는 조항을 명시
 - 3년 이내 거주 의무 개시시점 유예 또는 일시 퇴거 후 입주하는 경우 입주 준비기간(최대 90일)을 부여
 - 재공급받은 사람도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거주 의무자에 해당되나,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함
 -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에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등의 특별공급 받은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인용법령을 추가
- ④ 「주택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수정 (안 제60조의2제3항 및 제4항)
- ⑤ 거주 의무 주택 매입 신청시 공공환매 예외 (안 제60조의2제6항)
 - 공공환매 대상 주택의 재공급 예상가격이 주변시세의 120% 이상 되는 등 재공급 곤란이 인정되는 경우 매입 예외
- ⑥ 거주 의무 부기등기 내용 개정 (안 제60조의2제7항)
 - (현행) 거주 의무자가 거주 의무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매입함
 - (개정안) 거주 의무자가 거주 의무 이행 후 부기등기 말소하여야 양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매입함
- ⑦ 거주 사실 확인 신청 등 절차 규정 (안 제60조의3)
 - 거주 의무자가 “총 거주기간, 거주 의무 개시일, 거주기간 등” 거주 사실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
 - 지자체는 14일 이내(1회 2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에 거주 사실 확인 후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규정(거주 의무기간 미충족시에는 미충족 통보)
- ⑧ 거주 의무 부여 주택의 관리 (안 제60조의4)
 - 지자체는 거주 의무가 부여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 승인을 하는 경우 해당 내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하도록 규정
 - 한국토지주택공사(공공주택사업자)는 거주 의무 위반행위 등을 점검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 실태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 ⑨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중복가입 제한)에 관한 적용례 부칙 개정 (안 대통령령 제30146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 개정령 시행일(‘19.10.22.) 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에 시행일 이후에 추가로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개정 조문(제21조제1항제1호다목)이 적용됨을 명확히 정비

- **(현행)**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이 영 시행 전에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
- **(개정안)** 이 영 시행 이후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전화: 044-201-3326, 팩스: 044-201-5529\)](tel:044-201-3326)

국토교통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4.26.
~06.05.

부동산 공시가격의 조사·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여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지자체의 검토기능을 확대하여 공시가격의 객관성·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공시가격 산정자료 보강 (안 제9조)

- 공시가격의 정확성 개선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에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장을 추가

②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지자체 검토기능 확대 (안 제46조)

-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 개선을 위해 국토부가 산정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하여 시·군·구청장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전화: 044-201-3452, 팩스: 044-201-5536\)](tel:044-201-3452)

해양수산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4.24
~06.07.

친환경 수산물 인증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활용도가 저조한 활성처리제 비사용 인증을 삭제**하고, 인증 대상 확대 및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무항생제수산물원료가공품 인증을 신설**하는 등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 삭제 (안 제2조)

- 인증 실적이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을 삭제하고,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과 무항생제수산물 인증을 합하여 규정된 '무항생제수산물등'을 '무항생제수산물식품'으로 수정

② 무항생제수산물원료가공식품 인증 신설 (안 제2조, 제34조~36조)

- 무항생제수산물 인증 활성화를 위해 무항생제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항생제수산물을 혼합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무항생제수산물원료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을 신설하고, 무항생제수산물과 무항생제수산물원료가공품을 합하여 '무항생제수산식품'으로 정의

※ 문의처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tel:044-200-5631) (전화: 044-200-5631, 팩스: 044-861-9436)

중소벤처기업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4.23.
~06.03.

1인 창조기업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61호, 2024.2.27. 공포, 2024.8.28. 시행)됨

이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취소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을 법률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전담기관 지정취소 절차 등 규정 (안 제9조)

-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이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하기 전 전담기관에 지정요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취소 시 그 사실을 대외에 공개하도록 함

②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정비 (별표 3)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tel:044-204-7672) (전화: 044-204-7672, 팩스: 044-204-7669)

공정거래위원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4.24.
~06.0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개정('23.3.21. 개정)에 따라 전자거래 방식의 후원방문판매업이 가능해지면서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전자거래 매출을 제외하도록 명시하는 등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을 재정비하고, 최근 변화하고 있는 경제 환경 및 시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의 개별재화 가격제한과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 시 통지 의무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방문판매업자등 신고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변경 (안 제8조)
 - 방문판매업 및 전화권유판매업 신고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자등록 증명’으로 규정
- ②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 정비 (별표1)
 -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매출은 제외하고 산정하도록 명시
 -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 제출 시 해당 후원방문판매업체에 등록된 판매원별 공급가격 합계액 및 판매가격 합계액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규정
 -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직전 사업연도 영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실제 영업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
 -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이전에 방문판매 영업을 해왔던 경우 방문판매 판매자료를 이용하여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삭제
- ③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 통지 예외 확대 (안 제28조)
 -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이 일시적인 경우 3개월 전 변경 통지의무 면제
- ④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개별재화 가격제한 상향 (안 제30조)
 - 개별재화 가격제한을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 문의처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전화: 044-200-4431, 팩스: 044-200-4467\)](tel:044-200-4431)

금융위원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4.26.
~06.0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계좌 개설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 의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 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정보공유 의무 등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의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을 별도로 규정하기 위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법 제2조의5에 따른 금융회사의 자체점검시 절차 및 방법 등 명시 (안 제2조의4 신설)
 - 법 제2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상시 자체점검을 위해 피해의심거래 탐지 시스템의 현행황 작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로 규정하고, 임시조치 관련 내역의 기록·보존 방법 등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기록 방식을 준용하도록 규정
- ② 법 제2조의6 위임에 따라 금융거래목적 확인에 필요한 확인 방법 등의 사항을 명시 (안 제2조의5 신설)
 - 법 제2조의6에 따른 금융거래목적 확인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 요청 및 방법, 업무지침에 포함시켜야하는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

③ 정보 공유하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지급정지 종료 사유를 추가하여 명시 (안 제8조 제1항 제5호 신설)

- 전자금융업자가 피해금이 재이전된 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전자금융업자 계좌의 지급정지 등이 종료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정지 종료 사유에 포함하여 규정

④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 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정보 공유 방법 등 명시 (안 제11조의3 신설)

- 법이 적용되는 전자금융업자의 범위(선불업자),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 서로 공유되어야 할 정보 내용(별지 제7호, 제8호 서식), 정보 공유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

※ 문의처 :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전화: 02-2110-2976, 팩스: 02-2110-2946)

3. 법률 발의(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의원 등 13인)

2024-04-25 발의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로 나타나는 등 저출생·고령화 추세의 고착화로 인한 인구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그러나 지속적인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정책이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이민사회 관련 정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재한외국인, 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 난민 등 이주배경시민 및 이민사회에 관한 정책은 법무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분산하여 담당하고 있어 통합적·체계적인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출입국 및 이민 관리, 이주배경시민에 처우·정책지원 및 이민사회통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이주배경시민청을 신설함으로써 이민사회정책이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9항 및 제10항 신설 등)

행정안전위원회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2024-04-22 발의

현행법은 금고 상근임원의 자격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상근임원이란 상근이사장·상근이사 및 상근감사를 의미하는데, 개정 전 대통령령은 상근임원 중 상근이사의 자격만을 규정하고 있었음

그런데 최근 새마을금고 경영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명목하에 대통령령이 개정되어 상근이사장과 상근감사의 자격 요건까지 규정함. 개정 대통령령에 대해 내부 임직원들을 위한 개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실제 개정 대통령령에서는, 상근이사장에 대하여는 ① 금고 임원 6년(상근임원 4년) 이상, ② 금고·중앙회 상근직 10년 이상, ③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상근직 10년 이상 근무 경력 등의 자격을, 상근감사에 대하여는 ① 금고 감사·회계·재무 등 상근직 5년 이상, ②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감사·회계·재무관련 상근직 5년 이상 근무 경력 등의 자격을 새로 제정함. 이러한 자격 요건은 지나치게 엄격하여 회원 등 참여 주체의 참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신용협동조합법」 등 타 법률과 비교하여 비례적 타당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됨. 무엇보다 상근임원 자격을 크게 제한하여, 전문경영인의 진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금고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에 회원으로서 금고의 성장에 기여한 기간 또는 대의원으로서 활동한 경력이 상근임원의 자격 요건이 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 일정 기간의 회원 또는 대의원 경력이 있으면 상근임원으로 선임 또는 선출될 수 있도록 자격 규정을 개정하여 새마을금고 경영에 기여하려는 취지임(안 제18조제2항)

국토교통위원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1인)**

2024-04-24 발의

'23년에는 전년 대비 건축 허가면적은 25.6% 감소하고, 건축 착공면적도 31.7% 감소하는 등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

건설투자 및 부동산 경기는 지역경제와 서민층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감면하여 건설투자 활성화와 경기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7조의3 신설)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 현재까지 교섭단체간 합의된 의사일정은 없음

- 다만 민주당에서 지난 4/26 임시국회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414회국회(임시회)가 4월 30일(화) 14시 개최될 예정임
- 아울러 5/2(목) 본회의를 개최하여 이태원 특별법 재표결, 전세 사기 특별법,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표결 등을 추진할 예정임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4/29(월) 15:00	기부자 편의성 강화를 통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조승래·윤영덕 의원실 등	의원회관 5간담회실
	4/30(화) 07:30	제42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 소멸 위기의 대한민국, 국회가 제안하는 인구문제 해법	전혜숙·김병기 의원실 등	강변서재
	4/30(화) 10:00	22대 총선 결과 및 미국 대선 전망과 한반도 평화	박병석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4/30(화) 14:00	용역업체 변경시 근로관계 승계 입법토론회	양경규 의원실 등	국회 본청 223호
	4/30(화) 15:00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정치적 로드맵 국회토론회 - 제22대 국회를 기본소득 국회로	용혜인 의원실 등	한국스카우 트연맹회관
	5/2(목) 10:00	FAST 채널의 확산과 콘텐츠 유통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정필모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5/2(목) 10:00	탄소중립과 원전안전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연속세미나	우원식·김성환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5/2(목) 14:00	돌봄사회 실현을 위한 토론회1 - 돌봄민주사회로 가기 위한 첫걸음은?	신동근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5/3(금) 13:30	비동의강간죄 신설 적절한가?	최승재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자료집 등	4/29(월)	「팩트북」 제109호(2024-1호) 발간 - AI와 공교육	국회도서관	
	4/29(월)	「THE 현안」 제9호 발간 -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부터 구제까지		
	4/30(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43호(2024-5호) 발간 - 아일랜드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입법례		
	5/1(수)	「금주의 서평」 제676호(2024-17호) 발간 - 도서명 : 어머니 나무를 찾아서 저자 : 수잔 시마드		
	4/29(월) 16:00	2024년 「예산춘추」 두 번째호(Vol. 74) 편집위원회 개최	국회예산정책처	
	4/30(화)	제7차 예산정책처 보고서 발간심의위원회 개최		의정관 505호
	4/30(화)	「2024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 개최	국회입법조사처	
	4/29(월) 14:30	청년미래위원회 발대식 개최	국회미래연구원	국회도서관 대회의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32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4/22(월)	「THE 현안」 제8호 발간 - 주요국의 AI 교육 정책과 사례	국회도서관	
	4/24(수)	「금주의 서평」 제675호(2024-16호) 발간 - 도서명 : 당신의 언어 나이는 몇 살입니까? 저자 : 이미숙		
	4/26(금)	「2024 NABO 재정동향&이슈」 제24호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4/26(금)	「2024 NABO 경제동향」 제42호 발간		
	4/22(월)	「이슈와 논점」 2229호 발간 - 재정 조기집행 제도의 경기안정화 효과 분석	국회입법조사처	
	4/22(월)	「이슈와 논점」 2230호 발간 - 동반자관계에 대한 더 깊은 논의		
	4/24(수)	「NARS 입법정책」 150호 발간 -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체제 종료 대비방안		
	4/25(목)	「이슈와 논점」 2230호 발간 - 주민소송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요건·비용·절차 개선방안		
	4/25(목)	「NARS 브리프」 40호 발간 - 한국 입법영향분석의 세계화		
	4/22(월)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94호 발간 - AI시대 대한민국 사회와 개인의 미래: 기술과 공간의 변화가 주도하는 2050년 미래와 대응전략	국회미래연구원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4.22~04.28)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4/23(화)	해외 규제	미 대선 “트럼프 재집권”시 우리 기업의 미국 비즈니스에 미칠 영향 : 對 미국 전기차/배터리 투자 및 무역 정책을 중심으로
4/25(목)	지적재산권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최근의 대법원 판결 흐름을 뒤엎고 미라 베그론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1후10343 판결)
4/26(금)	형사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의 내용과 그 의미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성재열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